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에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관리 및 희귀질환자의 통합적 진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으로 인수공통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질병관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종합상황실, 의료안전예방국, 만성질환관리국 2개 과 중 1개 과 및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질병대응센터 15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되, 종합상황실의 정원 17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5명, 8급 7명) 중 4명(8급 4명)은 감축하고, 13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5명, 8급 3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질병관리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29. ~ 3.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정원”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79”를 “4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478”을 “47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68”을 “465”로 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7조제1항 관련)

1. 질병관리청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1) 위기대응분석관	1명
2) 위기대응분석관 3개 과	22명
3) 감염병정책국 1개 과	1명
4) 감염병위기대응국 1개 과	3명
5) 감염병진단분석국 1개 과	10명
6) 의료안전예방국 2개 과	12명
7)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위해대응관	1명
8) 만성질환관리국 1개 과	7명

2. 질병관리청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1) 국립보건연구원 1개 과	6명
2)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1명
3)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1명
4) 국립감염병연구소 6개 과	39명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검역 업무(국립검역소)	53명
2) 검역 업무(국립검역소)	12명

[별표 7]

질병관리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8조 관련)

제38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20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1
7급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u>정원은 별표 4와 같다.</u>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u>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한시정원) ① <u>인수공통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질병관리청에 두며, 해당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u>	제38조(한시정원) <삭 제>
② (생략)	(현행 제2항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4]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79</u>	<u>476</u>	-3
•	•	•	
•	•	•	
일반직 계	<u>478</u>	<u>475</u>	-3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68</u>	<u>465</u>	-3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6